

회사주식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진행안내

2018년도 단체교섭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 주식(1인당 36주)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

주식 지급에 필요한 증권계좌 개설절차 진행을 위하여

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『개인정보 제공동의』를 받고자 하오니

기한 내에 서명(Kate>전자서명서비스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, 회사 주식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서명을 당부 드립니다.

- 대상 : 합의일(2018.5.25) 현재 재직중인 직원
- 기간 : 2018.8.13(월) ~ 8.22(수)
- 서명 방법

**Kate → Worklink → 업무공통 → 전자서명서비스 → 서명할 자료
→ 주식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**



[Q&A]

Q1. 주식계좌 개설을 반드시 미래에셋대우에서 진행해야 하나요?

다른 증권사의 경우 직원이 직접 개인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 반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일괄 개인별 계좌개설 지원하여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
또한 증권사 자산규모, 재무건전성, 경제성, 업무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
Q2.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. 신규 개설을 해야 하나요?

노사합의에 따라 KT주식(36주)의 2년간(2018.8.2~2020.8.1) 매도 제한을 위하여 전용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
기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금번 주식 지급을 위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3. 개인정보 제공동의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계좌 일괄 개설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(Kate>전자서명) : ~8.22
- 개인별 계좌 개설 동의(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) : ~9.12
- 개인별 계좌 개설 및 주식 이체(미래에셋대우 일괄 추진) : ~9.21

※ 특히, 지급 대상자분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개인별 계좌 개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식지급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4. 퇴직 시에도 매도제한 기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나요?

2018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시에도 매도제한 기간(2018.8.2~2020.8.1)은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